

서울특별시종로구토지평가위원회운영
조례중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2004. 10. 14

재 무 건 설 위 원 회
전 문 위 원

서울특별시종로구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울특별시종로구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2004년 10월 4일 이종환 의원 외 6인이 발의하여 동월 5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I. 개정이유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12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14조의 규정이 개정(2000.1.28, 2000.5.16)됨에 따라 토지평가위원회의 외부전문위원을 보강하고, 현행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II. 주요골자

- 가. 토지평가위원회 위원중 임명직 위원 7인을 5인이내로 2인을 줄이는 대신 외부전문가 위원을 현재 8인이내에서 10인이내로 2인을 늘리고, 위원회의 공정성 및 객관성을 확보하여 위원회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고자 함 (안 제2조제3항제2호).
- 나. 임기만료전이라도 위원의 해촉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촉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안 제3조제2항).
- 다. 조문내용을 주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순화된 용어로 정비하고, 문맥을 고르게 하며 일부조문을 신설함 (안 제4조제2항·제3항 및 제6조).

III. 검토의견

1. 관계법령 검토

- 먼저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12조의2 제1항의 규

정에 의하면, “개별공시지가의 결정에 관한 사항 및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기타 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구청장 소속하에 구토지평가위원회를 둔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법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서 “구토지평가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상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구토지평가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위원은 지가공시 또는 감정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당해 지역사정에 정통한 자 또는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추천한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라고 2000.5.16 동조문이 일부개정되었으며,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것 외에 시·군·구토지평가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시·군·구의 조례로 정한다. 라고 정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자주입법권을 위임하여 자치단체별로 지역실정에 맞게 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2. 조문별 주요 개정내용

가. 안 제2조제3항제2호에서 토지평가위원회 위원중 임명직 위원 7인을 5인 이내로 2인을 줄이고, 외부전문가 위원을 현재 8인 이내에서 10인 이내로 2인을 늘리는 것은 위원회의 공정성 및 객관성을 확보하여 위원회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려는 것으로서 2000.5.16 일부개정된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4조제2항의 개정취지에 부합된다고 봅니다.

나. 안 제3조제2항의 규정에서 구청장은 임기만료전이라도 위원의 해촉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촉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신설한 것은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으로서 적절하다고 봅니다.

다. 안 제4조제2항중 “사고가 있을 때에는” 용어를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으로 일부개정하려는 것은 종전에는 “유고시 또는 사고가 있을 때”라는 용어를 법령에서 통상 사용하였으나, 앞으로는 법령용어를 평이하고 알기 쉬운 말로 순화하여 사용하도록 되

어 있으므로 법제처에서 정한 법령입안심사기준에 부합된다고 보며, 또한 기타 개정내용은 자치법규 일제정비차원에서 현행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현실에 맞게 보완·개선하려는 것으로서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봅니다.

IV. 관계법규

○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第12條의2 (市·郡·區土地評價委員會) ①다음 各號의 사항을 審議하기 위하여 市長·郡守 또는 區廳長所屬하에 市·郡·區土地評價委員會를 둔다.<개정 2000.1.28>

1. 第10條의2의 規定에 의한 個別公示地價의 決定에 관한 사항
2. 第10條의3의 規定에 의한 個別公示地價에 대한 異議申請에 관한 사항
3. 기타 市長·郡守 또는 區廳長이 附議하는 사항

②第1項에 規定된 것외에 市·郡·區土地評價委員會의 組織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本條新設 1995.12.29]

○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시행령

제14조 (시·군·구토지평가위원회) ①시·군·구토지평가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상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1996.6.29>

②시·군·구토지평가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부군수 또는 부구청장이 되고, 위원은 지가공시 또는 감정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당해 지역사정에 정통한 자 또는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추천한 자중에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개정 1996.6.29, 2000.5.16>

③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것외에 시·군·구토지평가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시·군·구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1996.6.29>